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5.



박왕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 왕 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구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진로진학 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.
- 다음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센터의 사업내용,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,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다음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끝으로, 안 제9조에서는 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0. 5. 20일부터 2020. 6. 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,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박왕규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의 안 번 호 | 0082029 |
|------------|---------|

발의일자: 2020. 5. 20.

발의자: 박왕규, 윤권근, 박정환, 안대국, 박종길,
김정윤

1. 제안이유

-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(안 제3조)
- 다. 센터 사업, 조직 및 인력, 이용대상(안 제4조~안 제6조)
- 라. 센터 운영 및 관리, 지도·감독(안 제7조~안 제8조)
- 마.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- 가. 사유: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
- 나. 근거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

5. 관계법령: 「진로교육법」 제18조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진로진학교육”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, 진로 겸사 및 상담, 진로체험, 진학 상담, 진로·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·지원
2. 적성 및 진로·진학에 관한 상담
3.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
4.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
2.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운영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·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도 · 감독)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령】

□ 진로교육법

-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"진로체험기관"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